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보도참고자료

희망의 대한민국

http://www.motie.go.kr

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: 문신학 원전산업정책과장(2110-5481), 문상민 서기관(4879), 김건혁 사무관(4880)

원전산업계 뿌리깊은 폐쇄성 타파

- 산업부, 원전 비리 재발방지 대책 마련 -

< 재발방지 대책 골자 >

① 책임자 처벌 및 문책, ② 원전분야 유착관계 근절, ③ 품질관리 강화, ④ 구매제도 개선

1 사건개요 및 성격

□ 이번 원전 품질서류 위조사건은, 원안위 신문고에 접수된 **제보를 조사하는 과정**에서 확인되었으며, 이는 지난해 발생한 품질검증서 위조사건과 비교할 때, 사안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음

○ 특히, 지난해 사건과 달리 **시험·인증기관이 위조주체**인 점, 시험성적서가 **위조된 부품이 핵심 안전장치**라는 점에서, **근본적이고도 강도 높은 대책의 마련이 요구**되고 있음

□ 이번 사건은 일부 무능하고 부도덕한 부품업체와 시험·검증기관의 불법행위로 촉발됐지만, 근본적으로는 **원자력계 폐쇄성**에 기인한 **"불투명한 구매제도"**와 **"품질관리 제도상 허점"이 원인**임

○ **현재의 원전 구매제도**는 원전 납품사가 스스로 선택한 시험기관의 성적서를 제출하므로, 이번 사건과 같은 **납품사와 시험기관간 유착이 가능한 구조**라 할 수 있음

○ **구매절차 차원**에서는 원전 안전 규제체계상 시험성적서 검수기관이 발주된 규격에 맞는 제품인지 여부만을 검수할 뿐, **시험성적서 자체에 대한 진위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는 상황**임

○ 또한, 현재 원자력분야 시험기관은 일반 시험기관과는 별도의 관리·감독체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**사실상 관리·감독 기능이 작동되지 않고 있었음**

○ 이와 같은 병폐의 **근본원인**은, 지난 30여년간 원전업계가 감시와 견제가 없는 **폐쇄적 집단화 현상이 심화**되면서, **각종 비리와 불투명한 제도, 무사안일한 업무관행이 일상화** 된 것에 기인함

2 정부 후속조치 방향

□ 정부의 후속조치는 **"국민안전이 최우선"**이라는 대원칙 하에서, ① 책임소재 및 원인의 철저한 규명, ② 원전 안전에 대한 전면 조사, ③ 비리 재발 방지책 마련 차원에서 실시될 것임

□ 우선, **감사원**이 그간의 원전 **부품 납품비리를 종합 분석**하고, 유형별 발생원인 등을 철저히 규명할 계획임

○ 특히, 한수원의 구매·계약시스템, 규제기관의 감독·검사 적정성, 원전부품 도입경로, 단계별·주체별 취약요인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**감사결과에 따라 즉시 관련자 문책과 제도개선** 등 조치를 취할 것

□ 원안위는 현재 **전 원전**(가동 23, 건설 5)에 대해 **시험성적서를 전수조사**하고 있으며, 금번과 같이 **시험기관이 직접 서류를 위조**한 사례조사도 병행할 것임

□ 산업부는 관련부처와 함께 원전산업의 **유착관계를 근절하는 제도적 장치**를 마련하고, 근본적으로 원전산업 생태계에 "견제와 감시", "개방과 경쟁" 시스템 구축을 위한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할 것임

3 책임자 문책 및 처벌

□ 시험성적서 위조 혐의자인 **시험기관과 부품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민·형사상 조치**를 이미 하였으며, 향후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 질 것임

□ 아울러, **감사원의 특별감사**를 통해 금번 사건과 관련된 기관에 대한 업무상 과실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, **"업무상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문책"**이 이루어 질 것임

○ 이와는 별도로, 한국수력원자력(주) 사장**(김균섭)을 6.6일(목) 면직**하였으며, **한국전력기술(주) 사장(안승규)에 대해서는 대주주인 한전이 해임절차를 신속히 진행**할 예정임

4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대책

□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제도 개선방안은 ① **원전분야 유착관계 근절**, ② **품질관리 강화**, ③ **구매제도 개선**임

□ **첫째**, 최근 원전분야 각종 비위사건의 근본 원인인 **원자력계 폐쇄성 타파**를 위해 **'원전분야 유착관계 근절'**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임

○ 먼저, 한수원을 포함한 유관 공기업 **퇴직자의 협력업체 재취업 금지를 확대 시행**하고, 이를 **위반한 납품업체에 불이익**을 주어 납품구조상의 유착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음

- 또한, 불법·고의 중과실로 안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 업체에 대한 **징벌적 손해배상 도입**을 검토할 것임

○ 한수원 내부의 원자력계 순혈주의 타파를 위해 혁신적인 외부인사 적극 영입, 유능한 내부인사 발탁 등 **인적쇄신을 지속 추진**할 예정

□ **둘째**, 금번 사건이 원전 부품 **납품절차상 제도적 미흡**에서 발생함에 따라, 다각도의 **'품질관리 강화'를** 추진하겠음

○ 먼저, 전문성을 갖춘 **국책시험연구기관이 원전분야 시험성적서 위조여부를 재검토**하도록 하는 더블체크 시스템 구축하고,

- **한수원이 직접 시험검증기관에 시험수수료를 지급**하는 등 부품 납품업체와 시험·검증기관간 비리 유착관계를 근절할 것임

○ 더불어,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하여, 시험·검증기관의 **성능검증 업무 종사자를 공무원으로 의제**하고, 관련 의무이행 소홀에서 발생하는 **손해배상 요건과 범위 등을 법제화**하는 등 민·형사 책임을 강화할 계획임

○ 금번과 같이 부도덕한 시험기관이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, **원안위가 전문관리기관을 지정하고, 전문관리기관이 시험·검증기관을 체계적이고 엄격히 감독·관리하는 제도**를 도입할 것임

□ 셋째, **불투명한 구매관행을 원천적으로 차단**하는 한편, **원전 부품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**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음

○ 한수원 **구매조직의 독립성, 기술적 전문성을 대폭 강화**하여 한전 기술, 건설·설비기술처 등 **발주부서를 견제·감시**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임

○ 제도적 차원에서는 최소가격보다 최고품질을 우선시 하는 **'최고가치 낙찰제'를 전면 도입**하고, **수의계약 최소화 장치를 마련**할 것

- 또한, **구매계획을 최소 10일 이상 사전 공개**하여, 불투명한 구매 과정으로 인해 기존 납품업체가 이익을 얻는 폐해를 방지할 계획

○ 산업부는 **「원전구매제도개선위원회」를 구성**하여 구매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, 궁극적으로 **원전산업 Value-chain의 경쟁을 촉진**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음

5 향후 계획

□ 금번 개선대책 중 산업부 소관사항은 **「원전혁신 TF」를 통해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**

○ 정부차원에서 국조실은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여 **부처간 협업을 통한 이행상황 점검 및 제도개선을 추진**하여, 후속조치와 개선대책 진행상황은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할 예정

□ **정부**는 지체없이 **관계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**를 추진할 것이며, **한수원**은 대책 이행을 위한 조직·예산 확보를 위해 해당사항에 대하여 **이사회 승인**, **관계기관 협의**를 조속 추진할 계획

□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 이후 발생하는 절차위반, 비리·부정사건에 대해서는 **철처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**할 것임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문신학 과장(☎ 02-2110-548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원전운영 개선대책 골자

구 분	현행	개선
원전업계 유착 관계 근절	○ 원전 퇴직자 협력업체 재취업 일부 제한 ▷ 한수원 1직급(처·실장) 이상 적용 ▷ 유관기관은 제한 없음	○ 원전 퇴직자 재취업 제한 대상 확대 ▷ 한수원 2직급(부장) 이상으로 확대 ▷ 원전 유관기관 전반에 시행 ("시험검증기관"까지 재취업 제한 포함)
	▷ 재취업한 납품업체 제재 없음	▷ 해당 납품업체 입찰 제한 방안 검토
	○ 외부전문가 영입 일부 시행('12년~) (한수원 본사 처·실장급 20% 미만)	○ 외부전문가 영입 대폭 확대 (한수원 본사 처·실장급 : '17년 50% 목표)
	○ 비위행위 관련 불법·고의 중과실의 경우에도 계약금액 한도내에서만 배상	○ 징벌적 손해 배상제 도입
품질관리 강화	○ 품질서류 위조시 감시절차 없음	○ 제3기관의 감시 절차 신설 (국책시험기관(산업기술시험원 등))
	○ 시험 기관은 계약서상 민·형사 책임 없음	○ 시험·검증기관에 대한 민·형사 책임 강화
	○ 원전분야 시험기관에 대한 관리 체계 없음	○ 원안위가 "전문인증관리기관" 지정 (인증요건 강화도 병행)
구매제도 개선	○ 한수원內 구매사업단 역할 미흡	○ 구매사업단 독립성·전문성 강화
	○ 효율성 중심 입찰제도 ▷ 최저가 낙찰제 ▷ 수의계약 임의 시행 ▷ 입찰공고와 동시에 입찰내용 공개	○ 안전성·투명성 중심 입찰제도 ▷ 최고가치 낙찰제 ▷ 수의계약 최소화 ▷ 입찰공고 최소 10일전 공개